「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❍ 제 안 자 : 심현정 의원

❍ 제안일자 : 2026. 02. 25.

❍ 회부일자 : 2026. 03. 12.

❍ 상정일자 : 2026. 03. 13.

2. 제안이유

❍ 출산 가구의 수도요금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영유아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, 출산율 제고와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❍ 제35조(요금 등의 감면) 개정

- 감면 대상에 ‘주민등록상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24개월 이하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’ 추가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❍ 「수도법」 제3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❍ 출산 가구는 영유아의 위생 관리를 위해 용수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여, 24개월 이하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 요금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❍ 안 제35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, 제11호를 신설하여 주민등록상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24개월 이하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에 대하여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5. 종합검토의견

❍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**관계 법령**

□ 수도법

제38조(공급규정) ① ~ ③(생　　략)

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·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. <신설 2010. 5. 25., 2013. 12. 30., 2019. 11. 26.>

1. 65세 이상인 자

2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
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

4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